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소장에 수사참여자 실명 기재〉

■ 진선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219호)

2026. 7.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심 정 희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개정안 주요내용	3
2. 현행 제도	4
3. 개정안 검토	5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진선미의원 등 12인
2. 발 의 일: 2025. 8. 18.
3. 회 부 일: 2025. 8.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제출하는 공소장의 기재사항으로 피고인의 성명, 죄명, 공소사실 및 적용 법조만을 규정하고,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결정서 작성 의무나 기재사항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한편,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르면 공소장의 경우 수사검사의 성명을, 불기소결정서의 경우 수사검사 및 결재단계에 있는 부장검사, 차장검사, 검사장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실무 수사과정에 참여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전원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지는 않음.

그런데 실질적인 수사를 담당하고 수사과정에 참여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성명이 공소장이나 불기소결정서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수사과정에서의 불법행위나 인권침해 등의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게 될 소지가 있는 만큼 수사의 신중성과 적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수사에 참여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실명이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공소장 및 불기소결정서에 수사에 관여한 검사 및 사법경찰관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대한 공정성과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4조제3항 및 제259조의3 신설).

Ⅲ. 검토의견

1. 개정안 주요내용

개정안은 공소장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 “수사에 참여한 검사 및 사법경찰관 전원의 성명”을 추가하도록 하고, 검사가 불기소처분하는 경우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결정서에 ① 피의자의 성명, ② 죄명, ③ 피의 사실, ④ 불기소이유, ⑤ 부수처분 및 압수물처분, ⑥ 수사에 참여한 검사 및 사법경찰관 전원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54조(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① · ② (생략) ③ 공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 4. (생략) <u><신설></u> ④·⑤ (생략) <u><신설></u>	제254조(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4. (현행과 같음) 5. <u>수사에 참여한 검사 및 사법경찰관 전원의 성명</u> ④·⑤ (현행과 같음) <u>제259조의3(불기소처분) ① 검사가 사건을 불기소처분하는 경우에는 불기소사건 기록 및 불기소결정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u> 1. <u>피의자의 성명</u> 2. <u>죄명</u> 3. <u>피의사실</u> 4. <u>불기소이유</u> 5. <u>부수처분 및 압수물처분</u>

	6. 수사에 참여한 검사 및 사법경찰관 <u>전원의 성명</u> ② 그 밖에 불기소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의 기재 사항·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

2. 현행 제도

현행 「형사소송법」은 공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①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② 죄명, ③ 공소사실, ④ 적용법조”를 규정¹⁾하고, 「형사소송규칙」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및 등록기준지, 피고인의 구속 여부”를 추가로 기재하도록 규정²⁾하고 있음.

또한, 현행 형사소송법은 불기소처분에 관하여 제259조에서 고소·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경우

-
- 1) 제254조(공소제기의 방식과 공소장) ①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소장에는 피고인수에 상응한 부분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공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죄명
 3. 공소사실
 4. 적용법조
 ④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 2) 제117조(공소장의 기재요건) ① 공소장에는법 제254조 제3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직업, 주거 및 등록기준지. 다만, 피고인이 법인인 때에는 사무소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지 여부
 ② 제1항제1호에 규정한 사항이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불기소결정서의 작성 의무나 기재사항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다만, 검찰사건사무규칙은 공소장 서식³⁾과 불기소결정 등의 이유통지서식 등⁴⁾을 별표로 규정하여, 공소장의 경우 수사검사의 성명을, 불기소결정서의 경우 처분검사의 성명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음.

3. 개정안 검토

본 개정안은 현행 검찰사건사무규칙의 별표 양식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재사항을 형사소송법 차원으로 격상하면서, 현행 규칙에는 없는 “수사에 참여한 검사 및 사법경찰관 전원의 성명”을 기재하는 것임. 이는 수사에 관여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실명이 드러나도록 하여 수사의 신중성과

3)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05조(공소장) 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2호서식의 공소장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가 압수물건에 대한 처분을 하는 때에는 압수물건처분서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고, 그 부분을 압수담당자에게 인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공소장에 첨부한다.

1. 피의자가 구속된 경우: 구속영장
2. 구속기간이 연장된 경우: 구속기간연장결정서
3. 피의자가 체포된 경우: 체포영장
4. 피의자가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인체포된 경우: 긴급체포서·현행범인체포서 또는 현행범인인수서
5.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 변호인선임서

4) 제119조(불기소결정 등의 이유통지와 사실증명) ① 검사가 법 제259조에 따라 불기소, 공소의 취소 또는 송치 이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8호서식, 별지 제179호서식 또는 별지 제180호서식의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 따르고, 공수처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수사처장의 요청에 따라 수사처가 송치한 사건에 관하여 불기소이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1호서식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송치사건 불기소이유 통보서에 따른다.

②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의자가 불기소결정에 관한 사실증명을 청구한 경우에는 검사는 지체 없이 별지 제182호서식, 별지 제183호서식 또는 별지 제184호서식의 사건결정결과 증명서를 교부한다.

적정성을 확보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에 대한 공정성과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는 취지로 볼 수 있음.

다만, 아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입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첫째, 현행법상으로도 피해자 및 피고인은 증거기록에서 수사에 참여한 검사나 수사관을 파악할 수 있고, 피고인은 방어권 행사에 필요한 경우 조사자 증언 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음. 또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⁵⁾에 따라 수사서류 작성자가 전자적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문제될 경우 결정문에 성명이 적시되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수사에 참여한 검사 또는 수사관을 확인할 수 있음.

둘째, “수사에 참여한”이라는 표현은 광범위하고 모호한 측면이 있음. 주요사건의 경우 합동수사본부를 별도로 편성하는 등 수사에 참여한 사법경찰관 및 검사, 수사관이 수집에서 수백에 이를 수 있는바 해당 인원 모두를 공소장 및 불기소결정서에 기입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셋째, 기소 및 불기소의 판단 주체는 검사로 국한된 것임에도 공소장

5) 제8조(전자서명) ①·② (생략)

③ 법원 외의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 공무원은 결정문, 조서, 보고서 등을 전자문서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전자서명을 한다. 이 경우 제3조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진술자의 서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진술자에게 전자서명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④·⑤ (생략)

과 불기소 결정서에 공소제기 권한이 없는 사법경찰관의 성명을 기재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입법취지에 공감하나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사람들 간에 고소·고발이 제기된 경우 해당 분쟁에 처분을 한 수사기관 종사자가 끌어들여져 직무 수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고, 대한변호사협회는 담당자들이 여러 번 변경되거나 주요사건의 경우 수사참여 인원이 수백명에 이를 수 있어 필요성이 없는 내용을 지나치게 확장 기재하는 문제가 있고, 단순히 수사 참여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불법행위나 인권침해행위를 해결할 수 있는 실효적인 방법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반대하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063